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2022. 7. 7.(목)

심 의 안 건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 목 차 ---

순서	제출부서	의안번호	건 명	쪽수
1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	2022-39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1
2	인구교육과 (교육진흥)	2022-40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	문화관광과 (수송대)	2022-41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	행복나눔과 (여성보육)	2022-42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5	농업기술센터 (농촌융복합)	2022-43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의 안 번 호	제39호
의 결 연 월 일	2022. 7. 7. (제6회)

심
의
의
결
사
항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제출연월일	2022. 7. 4.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39
----------	---------

제출연월일	2022. 7. 4.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 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어려운 용어 등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를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괄정비대상: 12개 부서 21개 조례

나.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정부합동평가 대상

1)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제명 변경된 경우 정비

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라) 예산회계법 ⇒ 국가재정법

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상위법령의 내용이나 용어 변경된 경우 정비

가) 공무원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는 계급별 여비 지급 구분 일부 정비에 따라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여비

나)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사항 반영

다) 특별회계 설치 시 존속기한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장학금특별회계 삭제

- 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마) 실무위원회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 바) 자연재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사) 친환경상품 ⇒ 녹색제품

3)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 변경 및 신설된 경우 정비

다. 용어순화 및 문장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자율 정비 대상

- 1)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2) 한한다(한함) ⇒ 한정한다(한정함), 월 ⇒ 개월, 인 ⇒ 명
- 3)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의거 ⇒ 에 따라(따른)
- 4) 당해 ⇒ 해당, 이라 함은 ⇒ 이란, 잔여임기 ⇒ 남은 임기
- 5) 범위내 ⇒ 범위, 회무 ⇒ 업무, 날로부터 ⇒ 날부터
- 6) 한 때 ⇒ 한 경우,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 7) 자 ⇒ 사람, 요하는 ⇒ 필요한, 에 불구하고 ⇒ 예도 불구하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5. 9.~5.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2조(「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여비”로 한다.

제3조(「거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을 “퍼센트”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 각호의 1”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공무원”을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 중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를 “같은 사건을”로 “인”을 “명”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 제1항 각호”를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을 “명”으로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 중 “자”를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협의회간”을 “협의회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에 따른”으로 “실·과 보조기관등”을 “담당관·과 등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에 의”를 “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타자등”을 “타자 등”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에 규정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밀업무에”를 “기밀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의 규정에서”를 “에서”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서”를 “에서”로 “이라 함은 실·과등”을 “이란 담당관·과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협의회에서”를 “협의회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하되”를 “따르되”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때”를 “경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입절차등”을 “가입절차 등”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협의회규정이”를 “협의회규정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규정이”를 “협의회규정에서”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를 “경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협의회 규정이”를 “협의회규정에서”로 “회의개최일”을 “회의 개최 시 개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협의위원을 선임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선임 하여야 한다.”를 “선임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잔여임기”를 “남은 임기”로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을 “제4조제4항단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회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회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5조(「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

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갈음한다.”를 “갈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

제6조(「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중 “현재액을”을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에”로 한다.

제8조(「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을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4항과 영 제36조제1항”을 “법 제35조제5항과 영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36조제4항”을 “영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10조(「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자문단”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으로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을 “다만”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필위된”을 “공석이 된 경우”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본인이”를 “스스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를 “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 조 제목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를 “(안전점검 및 상담)”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문단은”을 “군수는”으로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일시”를 “회의 일시”로 한다.

제12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에 대하여서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범위 내에서”를 “위원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1조(「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에 따른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거창교육청 교육장”을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

고 같은 항 제6호(중전 제7호)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를 “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6조의2 조 제목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기관”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으로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조 제목 “회의록의 비치”를 “회의록의 작성·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의 간사”를 “군수”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을 “작성·보존”으로 한다.

제13조 중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2조(「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조 제목,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으로 “의 규정에 따른”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을 “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으로 “법 제14조”를 “법 제19조”로 “의 규정에 따른”을 “에 따른”으로 “부수 되는”을 “딸린”으로 “참고·기타 「건축법 시행령」 이”를 “참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 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13조(「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4조 조 제목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조례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2장 장 제목 “친환경상품에 대한 의무구매 이행”을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이행”으로 한다.

제5조 조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 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부 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

으로 한다.

제8조 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 조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0조 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1조 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12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실시할 수”를 “할 수”로 한다.
제3장 장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조 제목 및 본문, 제16조 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4조(「거창군 환경기본조례」의 개정)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등이”을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로 한다.

제15조(「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거창군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령이”를 “법령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를 “미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행할”을 “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거창군 양수기 대부조례」의 개정) 거창군 양수기 대부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해를”을 “가뭄피해를”로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을 “규정함을”로 한다.

제2조 중 “양수기라 함은”을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한해지역”을 “가뭄피해 지역”으로 “군수는 기타”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조 제목 “한해 대책의 사용”을 “가뭄피해 대책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7조(「거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촌용

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촌 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촌용수구역이란”을 ““농촌용수구역”이란”으로 “수계별 단위”를 “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용수라 함은”을 ““농촌용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농촌용수운영”을 “농촌용수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오염방지대책”을 “오염방지 대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촌용수시설”을 “농촌용수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용수시설”을 “농촌용수시설”로 “관련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매 5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설치운영”을 “설치·운영”으로 “제반”을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를 “농촌용수 시설물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용수시설물”을 “농촌용수 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측정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용수원 및 용수시설”을 “농촌용수원 및 농촌용수 시설”로 “[별표 1]”을 “별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조 제목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을 “목적 외 농촌용수의 개발 및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용수 목적외”를 “농촌용수를 목적 외”로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용수사용”을 “농촌용수 사용”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조 제목 “용수구역의 관리협약”을 “농촌용수구역의 관리협약”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촌용수구역내의”를 “농촌용수구역 내의”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18조(「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을공동이용시설물(경로당, 마을회관등) 건축시 소요되는”을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건축시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 「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호에”를 “이란 「농지법」 제32조 제1항제3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이 규정에 정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건축법」 제19조”를 “「건축법」 제23조에 따른”으로 “농업인 주택”을 “농업인주택”으로 한다.

제4조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요하지 않는”을 “필요로 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건축법」 제9조에 의한”을 “「건축법」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9조(「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제1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거창군”을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4조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제4호 중 “거창군”을 “군”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예방의약담당주사”를 “장기기증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에 대하여는”을 “에게는”으로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거창군 보건소”를 “보건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0조(「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3조 중 “군내”를 “거창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팩”을 “묶음”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거창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1조(「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 제목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거

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한”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도”를 “에도”로 한다.

제4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를 “에 따른 조치를 할 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유홍·기타”를 “유홍,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를 “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와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1. 5. 25.] [대통령령 제31706호, 2021. 5.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계급별 여비 지급 구분 일부를 정비하고,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하여 국외 여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정부항공운송의 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21. 5. 25.>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

	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개정 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17. 7. 26.>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

	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

	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2호, 2019. 12.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추가하고,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제2호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비, 자동차운전 및"을 "경비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가입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2.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6. (생략)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생략)

8. (생략)

②~③ (생략)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국토교통부령 제630호, 2019. 6.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개편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중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 주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개편(안 제52조의3 신설, 안 제6조, 제21조,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3조 및 별표 1)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용달·개별·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일반으로 구분함에 따라 개별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전 [별표 1] <개정 2016.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1대 이상	○ 1대	○ 1대 이상.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최저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	○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특수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

	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	준 특수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덮개·결박 장비를 갖춘 소형화물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신 설>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신 설>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신 설>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관할 지역의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방송 및 홍보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지역 방송사업자 및 단체 등이 대표자로 구성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⑤ 지역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지역재난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
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95호, 2012.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고 시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지역별 기온·강수량·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 변경(안 제12조제1항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함.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50호, 2011. 4.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9931호, 2010. 1. 13. 공포, 4. 14.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집계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색상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상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상품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좀 더 쉽게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을 교육·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시행하고, 환경산업체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며, 환경 관련 사업체 등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26조(농어촌용수구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어촌용수구역이 2개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12. 15. 전부개정으로 제24조제3항 신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流域)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군·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조작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26호, 2022. 1. 6., 일부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26호, 2022. 1. 6., 일부개정]
제27조(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측망을 전국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관측망별로 매일 1회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u>지하수 수위관측망</u> 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관측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지하수 수위관측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u>지하수 측정망</u> 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 지하수 측정망을 이용하여 변동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④ (현행과 같음)

□ 「농지법」

[시행 2006. 4. 30.]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34조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農産物·林産物·畜産物·水産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農業·林業·畜産業·水産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3. 농업인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②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③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關係法令에 의하여認可·許可·승인등을 얻거나 申告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工事 또는 사업에 착수한 者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4.11. 전부개정

□「농지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1호, 2021. 4. 13., 일부개정]

-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9조(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 삭제 <2005. 11. 8.>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9조(건축물의 설계)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의 경우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8. 3. 21. 전부개정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안 번 호	제40호
의 결 연 월 일	2022. 7. 7. (제6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제출연월일	2022. 7. 6.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40
----------	---------

제출연월일	2022. 7. 6.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제안이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학생일 경우에도 교복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학교 및 품목을 확대함(안 제2조·제3조)

1)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추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현행) 교복 구입비 ⇒ (추가) 일상복 구입비

나. 그 밖에 문장 및 용어 정비(제5조·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24백만원 추경 확보예정(도비 1천만원)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 단축

가) 예고기간: 2022. 6. 21.~7.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를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복을 입는 학교: 교복 구입비
2.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제1호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

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등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1.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군 또는 국외에서 군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등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시기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복구입비를”을 “교복구입비등을”로 “교복구입비”를 “교복구입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복구입비”를 “교복구입비등”으로 “교복구입비를”을 “교복구입비등을”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교복구입비를”을 “교복구입비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상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개정규정에 따른 일상복 구입비 지원은 2022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u>	<u>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u>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u>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u>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제4조(지원 대상)</u>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각 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다른 시·군에서 전입하는 학생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 <u>제3조(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u>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복을 입는 학교: 교복 구입비 2.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제1호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 <u>제4조(지원 대상)</u> ① 교복구입비등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1.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군 또는 국외에서 군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등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등을

현행	개정안
<u>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원 시기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u> <u>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u>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u>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u>교복구입비</u> 지원 신청서를 해당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③ 군수는 신청서와 <u>교복구입비</u> 지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u>교복구입비</u>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u>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u>교복구입비</u>를 환수하여야 한다.</u>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u>교복구입비</u>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교복구입비</u>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u>지원받은 경우</u> <u>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시기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u> <u>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u>교복구입비등</u>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신청서와 <u>교복구입비등</u> 지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u>교복구입비등</u>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u>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u>교복구입비등</u>을 환수하여야 한다.</u>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u>교복구입비등</u>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교복구입비등</u>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일상복 구입비 추가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교복+ 일상복)

(단위: 천원)

구분	1차 연도 (2022년)	2차 연도 (2023년)	3차 연도 (2024년)	4차 연도 (2025년)	5차 연도 (2026년)
계	346,8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도비	104,040	99,000	99,000	99,000	99,000
군비	242,760	231,000	231,000	231,000	231,000

3. 관련 의견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외의 일상복 구입비도 지원 확대
함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이바지하고자 함

II. 2022년도 일상복 추가에 대한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중학생: (신입 62명+ 전입 15명)×300천원 = 23,100천원

나. 고등학생: (신입 29명+ 전입 10명)×300천원 = 11,700천원

다. 사업비: 34,800천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체 등에 대하여도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5) 약칭 사용의 정도와 방법

“A, B, C~”를 약칭할 때에는 “A”로 약칭하는 것을 피하고 “A, B, C~”등의 공통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로 약칭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하면 “A등”으로 약칭하고 이 경우 “등”을 붙여 쓸 수 있다.

의 안 번 호	제41호
의 결 연 월 일	2022. 7. 7. (제6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문화관광과장
제출연월일	2022. 7. 4.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41
----------	---------

제출연월일	2022. 7. 4.
제 출 자	문화관광과장

1. 제안이유

수승대관광지 활성화 및 이용 편의를 위해 거창군민의 시설이용료 경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대상자 확대, 카라반캠핑장 폐지 및 야영테크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영장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안 제3조 및 별표 1)

- 1) 카라반캠핑장 폐지 ⇒ 오토캠핑장으로 이용범위 확대
- 2) 야영테크 이용시간 조정

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썰매장 이용권 서식 삭제(안 제4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다.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5조제3항)

- 1) 거창군민, 30퍼센트
- 2)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 50퍼센트

(가)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법에 따른 유공자 모두를 열거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그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67조, 「지방자치법」 제16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6. 2~6.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수송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 297,679 제곱미터에 둔다.

② 관광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2. 야영장
3. 썰매장
4. 축제극장
5. 거창목재문화체험장
6. 그 밖에 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관광지 인근”을 “관광지 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 제4항) 중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를 “제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감 대상자는 경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별표 1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영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야영테크	오토캠핑장	카라반캠핑장	바코
이용료	15,000	30,000	30,000	1박 기준 -1박 이용
<u>이용 시간</u>	<u>그날 12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u>	<u>그날 14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u>		시간: 크 날 14사 부터 다 음날 13 시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시설”이란 수송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에 있는 주차장, 야영테크·오토캠핑장·카라반캠핑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썰매장, 축제극장,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위치) 수송대관광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 297,679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수송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 297,679 제곱미터에 둔다. ② 관광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2. 야영장 3. 썰매장 4. 축제극장 5. 거창목재문화체험장 6. 그 밖에 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제4조(시설이용료) ①~② (생략) ③ 썰매장 이용권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④ (생략)	제4조(시설이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 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 2. 관광지 인근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 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 2. 관광지 내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

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
4.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 설>

<신 설>

<신 설>

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
4.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주민등록법」상 25세 미만 미혼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2.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3.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④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8조(위탁징수) ① 군수는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주민등록법」상 25세 미만 미혼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2.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3.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위탁징수) 군수는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7호, 2022. 5. 9., 일부개정]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2020.6.)**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I. 정비필요성

1.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보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국가보훈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2. 정비필요성

- (감면 거부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을 일반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 발생
- ⇒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 (부처 간 협업) 지자체 운영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자치법규 규정 정비에 관한 국가보훈처 협업 요청

II. 법령 상 요금감면 대상 및 범위

1 관련 법령(상세는 첨부자료 참조)

- (보훈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복지부 소관) 및 국군포로송환법(국방부 소관)도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위 8개 법령에서 감면대상 시설·요금 및 감면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규정 방식도 유사

법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보훈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 이용료 면제 - 고궁 및 능원 - 국공립 공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 국공립 자연휴양림 ○ 이용료 50% 이상 감경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독립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고엽제법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18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 ~ 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	○ 의사자 본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배우자 및 자녀 ○ 활동보조인(의사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송환법	○ 등록 포로 ○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 의사상자법의 경우 대관공연·대관전시 제외

⇒의무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모두 열거할 것을 권고함

의 안 번 호	제42호
의 결 연 월 일	2022. 7. 7. (제6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복나눔과장
제출연월일	2022. 7. 6.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42
----------	---------

제출연월일	2022. 7. 6.
제 출 자	행복나눔과장

1. 제안이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둠(안 제16조)
- 나. 용어 및 문장 정비함(안 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21조·제22조)
- 다. 법령 입안원칙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제4조·제20조·제23조·제24조)
 - 1) 삭제: 당연직위원 임기, 위원회 수당
 - 2) 변경
 - (가) 법령의 정의와 같은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 표현방식
 - (나) 회의록 작성·보존 주체 간사⇒ 군수
- 라. 위원회 운영세칙 신설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지방자치법」 제28조·제130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6. 15.~7.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민”을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군민”으로 한다.

제2조 앞의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를 삭제한다.

제8조 앞의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을 삭제한다.

제8조 조 제목 “(조성 기준의 설정)”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의 설정)”으로 한다.

제9조 중 “조성)”을 “조성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등)”을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제16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앞의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홍보

② 시민참여단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3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4조 중 “서포터즈”를 “시민참여단”으로 각각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의 “제5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6조 조 제목 “(설치)”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자문을 요구하는”을 “자문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성친화도시·기업지원·일자리·안전·도시재생 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여성·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다양한 계층의 여성

다.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23조 조 제목 “(간사)”를 “(간사 및 회의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2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분과위원회는 제16조 개정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은 제13조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장 총칙</u>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u>제3조(적용범위)</u>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u>군의 모든 행정</u>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생략) <u>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u>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u>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u>은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u>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u>	<u><삭 제></u>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 <u>제3조(적용범위)</u>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u>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u>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u>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u>,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u>군민</u>은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u><삭 제></u>

실시 및 평가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6. (생략)

제9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직장·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의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제12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삭 제>

제8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6. (생략)

제9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을 말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직장·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의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말한다)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제12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

제13조(구성 및 운영)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란 관내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군민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홍보

제14조(활동지원) 군수는 서포터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다른 서포터즈의 모범이 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서포터즈에게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16조(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홍보

② 시민참여단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3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4조(활동지원) 군수는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16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신 설>

제1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생 략)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업무 관련 실·과·사업소장
2.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문직 여성·직장여성·전업주부·영유아 돌봄 여성·소외계층 여성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성친화도시·기업지원·일자리·안전·도시재생 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여성·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다양한 계층의 여성
 - 다.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특별한 사정 없이 2회 연속 위원회 불참 등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회의) ① (생략)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4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특별한 사정 없이 2회 연속 위원회 불참 등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22-0066

~살피건대, 당연직 위원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위원에서 해촉 되는 위원을 말하는 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 등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은 형식적으로는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참석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연직 위원 제도가 있는 것은 심의와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회의록 작성보존과 관련하여 그 주체 P217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권한이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법령상 회의록의 작성보존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록의 작성보존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제13조제3항에서도 위원회의 회의록은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칙과 부칙의 장·절의 구분 등 P312

자치법규 본칙의 조문 수가 많으면(통상 조문 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제43호
의 결 연 월 일	2022. 7. 7. (제6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출연월일	2022. 7. 6.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43
----------	---------

제출연월일	2022. 7. 6.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이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군 농업인의 농외소득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용 요건 완화기준 신설(안 제10조)

- 1) 사유: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방법: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6. 15.~7.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가공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공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 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일 것. <u>다만, 부원료는 다른 지역 산물일 경우에도 가능하다.</u>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 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등 판단 결정 후에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가공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공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 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일 것. <u>다만,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u>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 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등 판단 결정 후에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법령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